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제643호 2023. 11. 1. (수)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23-79호 정선(신동) 군계획시설사업(수도공급설비)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1
- 정선군 고시 제2023-80호 정선(정선) 군계획시설사업(자동차정류장)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4
- 정선군 고시 제2023-83호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 고시.....7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23-1247호 차량의 운행 제한 공고.....12
- 정선군 공고 제2023-1255호 정선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15

- 정선군 공고 제2023-1261호 2023년 자연재난 예경보시설 설치사업 행정예고.....22
- 정선군 공고 제2023-1272호 정선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5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관 (전화:560-2213, FAX:560-2592)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23-79호

정선(신동) 군계획시설사업(수도공급설비)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정선군 고시 제2020-261호(2020. 11. 20.)로 최초 결정 고시된 정선(신동) 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에 대하여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정 선 군 수

1. 위 치: 정선군 신동읍 고성리 13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정선(신동) 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사업

나. 명 칭: 정선(신동) 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신설사업(통합정수장)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군계획시설 결정		실시계획 인가	비고
	세부시설명	규 모	금회시행	
유통·공급 시설	수도공급설비 (신동통합정수장)	A=11,755 m ²	□ 수도공급설비 A=11,755m ² (구역면적) □ 시설용량 Q=3,500m ³ /일 ■ 유입유량계실 A=26.98m ² ■ 착수정 A=92.43m ² ■ 혼화응집침전지 A=210.40m ² ■ 급속여과지 A=265.12m ² ■ 정수지 및 송수펌프실 A=340.40m ² ■ 가압장 A=25.76m ² ■ 슬러지처리시설 A=160.00m ² ■ 농축조, 분배조 A=59.63m ² ■ 여과지동 A=364.73m ² (연면적 A=507.22m ²) ■ 정수지 및 송수펌프동 A=137.6m ² (연면적 A=263.73m ²) ■ 약품투입동 A=166.08m ² (연면적 A=166.08m ²) ■ 농축조동 A=8.58m ² (연면적 A=42.81m ²) ■ 배출수지동 A=14.56m ² (연면적 A=30.8m ²)	

4. 사업시행자 및 주소

가. 성 명: 정선군수(상하수도사업소)

나. 주 소: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정선로 1047)

5. 사업기간

가. 당 초 : 2021. 4. 16. ~ 2023. 12. 31.

나. 변 경 : 2021. 4. 16. ~ 2024.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붙임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토지조서

순 번	위 치	지 번	지 목	면 적 (m2)		소 유 자		이해관계인		
				공부	편입	주 소	성명	관계 인	성명	소유권이 외의권리 의종류및 내용
1	신동읍 고성리	139	대	780	780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2	신동읍 고성리	140-7	도	172	6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3	신동읍 고성리	170-8	전	1,530	1,528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4	신동읍 고성리	140-12	전	4,135	1,394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5	신동읍 고성리	144-2	도	812	1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6	신동읍 고성리	145-1	전	2,440	2,435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7	신동읍 고성리	146	대	254	254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8	신동읍 고성리	147	대	225	225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9	신동읍 고성리	148-1	도	46	1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10	신동읍 고성리	148-3	전	4,857	4,857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11	신동읍 고성리	164-1	도	6,845	274	-	국(국토교 통부)	-	-	-
계				22,096	11,755					

정선군 고시 제2023-80호

정선(정선) 군계획시설사업(자동차정류장)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강원도 고시 제1985-134호(1985. 12. 14.)로 최초 결정되어 강원도 고시 제2021-138호(2021. 4. 2.)로 변경 고시된 정선(정선) 군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승강장 증축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정 선 군 수

1. 위 치: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757-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정선(정선) 군계획시설사업(자동차정류장 승강장 증축)
 - 나. 명 칭: 정선(정선) 군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증축(승강장)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군계획시설 결정		실시계획 인가	비 고
	세부시설명	규 모	금회시행	
교통시설	자동차정류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A=4,824㎡	☐ 자동차정류장 A=4,824㎡(구역면적) ☐ 금회시행 ▪ 승강장 증축 A=81.60㎡	

4. 사업시행자 및 주소
 - 가. 성 명: 정선군수(교통관리사업소)
 - 나.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226
5. 사업기간
 - 가. 당 초 : 2023. 10. 4. ~ 2023. 10. 31.
 - 나. 변 경 : 2023. 10. 4. ~ 2023. 12. 29.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불임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토지조서

순 번	위 치	지 번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공부	편입	주 소	성명	관계 인	성명	소유권이 의의권리 의종류및 내용
1	정선읍 북실리	618-13	전	147	147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2		757-3	대	1,493	1,493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3		757-4	도	273	273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4		757-5	대	1,316	1,316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5		757-7	대	1,595	1,595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계		5필지		4,824	4,824					

정선군 고시 제2023-83호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 고시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정 선 군 수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칙

2023. 9. 25.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의 규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교류와 상생협력을 통하여 인구감소시대에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목표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협의회는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구성) ①협회의 회원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별지 제1호서식” 서식에 의한 참여동의서를 제출한 각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한다.

②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주기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정 해제된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해제됨과 동시에 회원자격이 자동소멸된다.

제4조(사무소)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협의회장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특례·교류 협력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인구유출에 대한 재정·세제·규제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7조 및 제22조에 따른 지역상생발전기금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개선 사항
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개선사항
5. 인구감소위기에 대응하고 국가-지방 간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력 및 건의하는 사항
6. 그 밖에 본 협의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제 2 장 조직 및 운영

제6조(조직) ①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0명 이내,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둔다.

②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③부회장은 광역 자치단체별로 회장이 선출되지 않은 기초 자치단체의 시장·군수·구청장에 한해 1명씩 선출한다.

제7조(임원선임 및 임기) ①임원 선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과 부회장은 정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3.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4. 서기는 간사가 지정하며, 간사를 보좌한다.

②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별지 제2호서식” 서식에 의한 출석 및 표결 권한 위임장을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회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심의와 의결권을 갖는다.

④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대행자는 「인구감소지역 지정고시」에 따른 광역 지방자치단체 순으로 한다.

제8조(권리와 의무) ①회원은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제5조에 관련된 의견을

개진하거나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③회원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④회원은 협의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협의회의 활동에 협력하여야 한다.

⑤회원은 부담금을 소속 시·군·구의 예산에 계상하여 협의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총회 등) ①협의회 총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협의회 회장은 연 1회 정기회를 소집한다.

②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원과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부득이한 사유로 총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임원회의에서 총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 ①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실무협의회장은 협의회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③실무협의회장은 의안을 취합하고 검토의견서를 붙여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회의 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실무협의회원은 협의회 임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의안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제11조(회의사항) ①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 및 회원가입 승인에 관한 사항

3. 사업비의 확정 및 결산의 승인

4. 기타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회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임원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1. 인구소멸위기 대응에 영향을 주는 국가정책에 대한 논의 및 정책 건의사항

2. 당면한 공동현안에 관한 의견 집약 및 조사 연구사업

3. 사무국의 운영경비, 인건비, 실비보상비와 관련된 사항

4. 기타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임원회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협의회 사무국장은 총회 및 임원회의의 내용과 결과를 회의록에 작성하여 관리한다.

- 제12조(의안 및 정족수) ①회원은 의안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임원회의에서 사전 검토를 거쳐 협의회 회의에 상정한다.
 ②의안은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협의회 회원은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무 국

- 제13조(사무국) 협의회 원활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필요시 시·군·구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사무국의 업무)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인구감소위기 대응을 위한 법령 제·개정 및 정책 입안 건의
2. 유관기관과의 협의
3. 예산편성 및 집행 등 회계 관리
4. 회의계획 수립, 회의자료 작성 및 통보
5. 기타 협의회와 관련된 사항

- 제15조(자문위원) ①협의회의 주요 의안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관련기관·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③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자문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재정 및 기타

- 제16조(재원) 협의회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시·군·구의 부담금
2. 특별부담금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4. 기타수입

- 제17조(부담금) ①부담금은 협의회 총회에서 정하고, 사무국 지정 은행계좌로 수납·관리하여야 한다.
 ②특별부담금이 필요한 경우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의결서를 첨부하여 문서로써 요구하여야 한다.

- ③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사무국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협의회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협의회에서 결정한 공동사무의 처리 또는 공동사업의 추진에 따른 부담액은 그때마다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8조(사무의 인계) 회장은 임기만료 후 20일 이내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일체의 기록과 경비 및 부담금의 집행 잔액을 차기 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9조(회칙 개정) 협의회 회칙의 개정은 재적회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0조(보칙) 이 회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창립총회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창립총회에서 인준된 임원의 임기는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23-1247호

차량의 운행 제한 공고

「도로법」 제76조제1항·제2항, 제77조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차량의 운행 제한을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4일

정 선 군 수

도로의 종류	군 도	노선명	7호선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최대 적재 중량 5톤 이상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특수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자 동차) 및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도로 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 ①,②항)	구간	L=1.3km (사북읍 직전리 517-6 ~ 사북리 342-2) ※ 붙임도면 참조
기간	2023. 10. 24. 부터 ~ 제한사유 해소시 까지		
이유 - 군도 신규개설 후 우회도로 미개설에 따른 중차량(화물자동차 등) 통행으로 시가지 혼잡 발생, 도로시설물 훼손예방 및 지역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차량 통행제한 구간 설정			
그 밖의 사항 - 우회도로 : 기존도로[구 군도] 이용 (직전리 584-3 ~ 사북리 439-11) - 예외 : 긴급자동차, 통행허가를 받은 자동차, 도로시설 정비 및 관리용 자동차			
첨부서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차량의 운행 제한 위치도

1. 도로의 종류 : 군도 7호선
2. 제한구간 : 사북읍 직전리 517-6 ~ 사북리 342-2 [L=1.3km]
3. 대 상 : 최대 적재 중량 5톤 이상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특수자동차
4. 기 간 : 공고일부터 ~ 제한사유 해소시 까지
5. 사 유 : 군도 신규개설 후 우회도로 미개설에 따른 중차량(화물자동차 등) 통행으로 시가지 혼잡발생, 도로시설물 훼손예방 및 지역주민 안전확보 필요



차량의 운행 제한 지형도



정선군 공고 제2023-1255호

정선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정 선 군 수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률」에 따라 관내 옥외행사에서의 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옥외행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나.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 및 신체를 지키기 위한 범위를 규정함 (안 제3조)
- 다. 안전관리계획의 관리대상을 규정함(안 제7조)
- 라. 안전관리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 요령을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3. 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23. 10. 26. ~ 2023. 11. 15.(20일간)

5.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5일까지 정선군수 (안전과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수(안전과)

○ 연락처 : 전화(033-560-2326), 팩스(033-560-2174)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안전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정선군 내 옥외행사에서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선군민의 안전확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는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 중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열리는 행사를 말한다.
2.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3. “주관”이란 주최 기관·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관계인”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5. “안전관리요원”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참여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출자·출연 기관”이란 「정선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순간 최대 인원이 5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 옥외행사
2.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공연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연장을 말한다)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3.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이 자발적으로 500명 이상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해 각종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군민의 책무) 정선군민은 군이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관리계획)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행사 개시 14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

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1. 군 또는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군 또는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4. 군이 추진하는 사업 또는 그 사업과 연계된 민간추진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내용(일시, 장소, 순간 최대 운집 인원 또는 수용 능력 등)
2. 옥외행사 지역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3.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4. 비상시 대응 요령, 담당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5. 비상시 교통계획
6. 주차장 수용 대수 및 주차예상 대수
7. 지휘본부 설치 운영을 위한 교통, 통신 등의 제반 조건
8. 재난 보상 보험 가입 시행
9.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 및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군수 및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옥외행사의 후원을 신청하는 기관 등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제8조(안전점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 개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장과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거나 주무부서에 명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라 군수가 안전관리계획을 신고받은 옥외행사
2. 주최자·주관자가 없으나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

② 군수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점검 사항은 관할 읍·면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재난예방조치 등) ① 군수는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의 실시를 요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면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수 사람의 안전에 위해를 끼

칠 수 있는 재난이 예견되어 긴급하게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 시설의 사용 제한 또는 행사를 금지 시킬 수 있다.

1. 제2항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때
2.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 없이 화기(火氣) 사용, 풍등·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등 화재 발생의 위험이 인정되는 때
3. 그 밖에 옥외행사 전 또는 중에 예상하지 못한 위험 요소가 발생한 때

제10조(질서유지 등)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요원 배치 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최소한의 교통통제와 안전관리요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응급 의료지원 요청)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 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주최자의 준수사항) ① 군수는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주최자에게 옥외행사의 중단을 선언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주최자 없는 옥외행사의 경우에는 참여자에게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4. 행사 종료시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게 할 것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시·군·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① 시·도지사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도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군·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군·구안전관리 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시·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선군 공고 제2023-1261호

2023년 자연재난 예경보시설 설치사업 행정예고

태풍 및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재난에 대비하여 자연재난 예경보시설 설치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정선군 안전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26일

정 선 군 수

1. 사 업 명 : 2023년 자연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사업

2. 행정예고 및 설치 목적

태풍 및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재난에 대비하고자 자연재난 사각지대를 감시하는 예경보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 구축된 시설 추가 및 보강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3. 관련근거

-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 기간 : 2023. 10. 26. ~ 11. 14.(20일간)

5. 공고방법 : 정선군 홈페이지(<https://www.jeongseon.go.kr/portal>)

6. 설치장소(정선군 관내)

연번	주 소	장 소	용 도	촬영 시간	녹화 기간	운영 기관	비고
1	정선읍 봉양리234-2	정선1교 인근	재난감시CCTV	24시간	30일	안전과	
2	여량면 봉정리451-1	정선소수력 발전동 정상 인 근	재난감시CCTV				
3	임계면 송계리 786-6제	송계교 상류	재난감시CCTV				
4	고한읍 고한리274-291	지장천상류	재난감시CCTV				

※ 당초 사업계획에 따른 CCTV 설치 3개소, 기구축 CCTV 고정식 추가설치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1.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정선군수(참조:안전과)로 서면(우편, FAX)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 10. 26. ~ 11. 14.(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방문제출 등

※ 우편은 제출 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락처, 주소,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검토 의견과 그 사유 등)

라. 제 출 처 : 정선군 안전과 재난대응팀

◦ 우편 :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문화예술회관 2층 안전과)

◦ 팩스 : 033)560-2174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정선군 안전과 재난대응팀 (033-560-2930)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정선군 공고 제2023-1272호

정선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가.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개정('23. 6. 11.)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국토교통부의 시·군·구 지명위원회 조례 표준(안)에 따라 지명위원회 구성 인원 등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사항, 회의 진행과 관련한 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명위원회 설치 근거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나.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반영(안 제4조)

1)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 한 차례만 연임

다. 시군구 지명위원회 조례 표준안 반영

1) 위원회 위원수 및 부위원장, 당연직 규정 정비(안 제3조)

2) 위원 해촉 규정 신설(안 제4조의 2)

3) 위원장 직무 대행 규정 정비(안 제5조)

4) 위원회 소집예정일 서면 통지 규정 정비 및 서면심의 규정 신설(안 제6조)

5) 관계공무원, 전문가 의견 청취 규정 정비(안 제8조)

6) 위촉직과 회의참석자 수당 지급(안 제9조)

7) 도지명위원회 보고 규정 삭제(안 제11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3일(4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민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민원과

○ 전 화 : 033 - 560 - 2183

○ F A X : 033 - 560 - 2407

○ E-mail : nseosh@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 치 법 규 명 : 정선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 정 안	찬성여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정선군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으로, “정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7명”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군수”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를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한다”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관계 공무원”을 “당연직 : 문화체육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직”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를 “지명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로, “업무담당자”를 “지명업무 담당자”로 한다.

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중 “공무원이 아닌”을 “위촉직”으로, “3년”을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제3항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을 “당연직 위원중 직제상 우선 순위의”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7일”을 “5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전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회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중 “에 대하여는” 을 “과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정선군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 규정함----- -----.
제3조(구성) ①정선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한다. 1.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구성) ①----- ----- ----- 10명 ----- ----- ----- -----. ②----- 군수----- ----- 지명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 위촉한다. 1. 당연직 : 문화체육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2. 위촉직 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삭 제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② (생 략)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삭 제>

⑤-----
-- 지명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
----- 지명업무 담당자-
-.

제4조(임기) 위촉직 ----- --
---- 2년-----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
행한다.

제6조(회의)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
며, 소집예정일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
다. <단서 신설>

③ (생 략)
<신 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
명을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
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하여 읍
· 면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 전문
가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
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
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

----- 당연직 위원중 직제상
우선 순위의 -----.

제6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 5일 -----
----- . 다만, 회의를 긴급
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전이 경미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
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
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
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
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
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자료의 제출 등을 요
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 --
-----과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

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 결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삭 제>

관계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 ① 생략

② 관할 지역의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 지명위원회를 두고,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군·구 지명위원회를 둔다.

③ 국가지명위원회,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④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도 지명위원회와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1조의2 (지명의 결정) ① 시·군·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시·도 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시·도 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 ⑥ 생략

제91조의3 (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① 제91조의2에 따라 결정된 지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91조의2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각각 재심의 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심의를 한 안전에 대해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시 재심의를 청구할 수 없다.

④ ~ ⑦ 생략

제91조의4 (자료제출 등의 요청)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명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2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시·군·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할 것
2.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할 것
3.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할 것
4.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정할 것
5.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9조의3 (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1조의3에 따라 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6호의3서식의 청구서에 재심의 청구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